

인천광역시 경영수익사업용지의 매각 등 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경영수익사업용지의 매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023
----------	------

제출년월일 : 2009. 3.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이유

가. 2007. 11. 19일 대법원에 제소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행정소송에서 2009. 12. 24일 판결(2007추165 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결과 우리시가 승소함에 따라 조례의 효력이 없는 「인천광역시 경영수익사업용지의 매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경영수익사업용지의 매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함

□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3쪽)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경영수익사업용지의 매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경영수익사업용지의 매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p><input type="checkbox"/>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2조(일반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 <p><input type="checkbox"/> 「지방공기업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 제40조 (중요자산의 취득·처분) <p><input type="checkbox"/> 「지방공기업법 시행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1조 (중요자산의 취득·처분) <p><input type="checkbox"/>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 제4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p style="text-align: center;">“ 별 첨 ”</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일반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일반재산에 대하여 제27조 및 제3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매각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기준 중 매각가격을 정할 때에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와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조성원가를 매각가격의 최저한도로 정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5조 (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40조 (중요자산의 취득·처분) ①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1조 (중요자산의 취득·처분) ①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7호·제8호 및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처분하는 자산은 이를 제외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이상(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2억 5천만원)인 자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로,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1건당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득·처분결과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한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